

충청북도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김호식

충청북도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정상교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 : 2019년 2월 26일

○ 회부일자 : 2019년 2월 27일

3. 제정이유

- 우리도가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전통무예 진흥과 관련 세계무예 마스터십위원회(WMC) 등의 지속적 지원을 위한 지원근거(조례) 마련.

4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부여(안 제4조)
- 전통무예의 계승·발전·보급을 위한 단체 및 활동에 대한 비용 지원(안 제5조)
- 보조금의 지도 감독(안 제6조)

5. 검토의견

- 금번 제정조례안은 충북도민의 건강증진과 전통무예의 세계화 및 체계적인 진흥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 - 첫째, 안 제4조에서는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
 - 둘째, 안 제5조에서는 도민의 건강증진과 전통무예의 창조적 계승 및 진흥을 위한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및 소속 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사항을
 - 셋째, 안 제6조에서는 보조금의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- 금번 제정조례안은 충북도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고, 전통무예의 세계화와 체계적인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, 예산지원 및 공무원의 파견 등을 위한 조례로서, 특히 보조금 지출근거를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17조를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 : 충청북도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조례안 1부. 끝.